

【 8 】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8. 04.

제출자 : 양주시장

□ 제안이유

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코자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제정근거 및 제정취지를 규정함.(안 제1조)
- 나. 센터의 명칭 및 설치요건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,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규정 함.(안 제5조)
- 라.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하며, 필요할 경우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.(안 제9조)
- 마. 지도감독 및 센터 지원근거를 마련함.(안 제12조, 제13조)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설치)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“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로 한다.

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3조(기능)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·상담 및 교육
 2.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 3.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
 4.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
 5.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
 6.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
- ② 제1항의 기능 중에 양주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제4조(시설)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·상담실·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설치하여야 한

다.

제5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·가정상담팀·가정교육팀·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(겸직)으로 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.

제6조(임용 및 복무) 센터 조직원의 임용 및 복무에 대하여는 여성부의 「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」에 따른다.

제7조(위원회 운영)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「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자원봉사자)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,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9조(강사)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.
-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제10조(운영의 위탁)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
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 위탁 할 수 있다.
-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양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- 제11조(주민참여)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- 제12(관련기관과 연계 추진)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·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.

- 제13조(지도감독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

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·점검
할 수 있다.

제14조(지원) 시장은 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
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 등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사회복지과
임 안 자	실·과장	사회복지과장
	직위·성명	홍승섭
	담당	여성정책담당
	직위·성명	남경선
담당자		이경란
성명·전화		(820-2316)